

구리시 고시 제2024 - 147호

주택건설 사업계획(변경) 승인 고시

구리시 인창동 515-1번지 일원에 구리시 고시 제2022-26호(2022.2.21.)로
고시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, 『주택법』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
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승인 처리하고,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12. 31

구 리 시 장

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서

1. 사 업 명 : 구리시 인창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
2.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: 인창동지역주택조합 정연우 외 1인
(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77, 3층)
3. 사업시행자의 위치, 규모
 - 1) 위 치 : 구리시 인창동 515-1번지 일원
 - 2) 면 적 : 전체사업 부지면적 : 8,106.00m²
- 아파트 부지면적 : 7,795.00m²
- 기부채납(도로)면적 : 311m²
 - 3) 건축면적 : 1,545.9173m²
 - 4) 건축연면적 : 31,162.9863m²
 - 5) 건폐율 : 19.83%
 - 6) 용적율 : 248.26%
 - 7) 사업비 : 205,906,000원
 - 8) 사업규모 : 49A, 49B, 49BA, 59A, 59B - 3개동 244세대
 - 9)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: 경비실,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, 주차장 등
4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승인일 ~ 2027년 1월 31일(예정)
5.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(일괄)처리 사항
 - 1)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
 - 2)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,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
 - 3) 『건축법』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 - 4)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제 61조에 의한 허가
6. 관계도서는 구리시 건축과(031-550-2403) 비치하고 있습니다.